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축물 침수 발생 시, 감전사고 방지 기술 적용 》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44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제220524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축물 침수 발생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2

I.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524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5.

다. 회 부 일 : 2024. 11.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건축물 침수 발생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생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u>방수</u>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 ----- ----- ----- ----- ----- ----- ~~방수~~ <u>등을</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u>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층) ① ----- ----- ~~침수 시~~ <u>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건축법」 제49조제5항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①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차수판·역류방지 밸브)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1항²⁾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침수 시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생략)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건축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에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감전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하고(아래 표 참조)³⁾,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월별 감전사고 사상자 현황(2021년 ~ 2023년) 】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	23	14	53	32	29	51	47	33	35	34	29	32
2022년	30	12	21	26	39	43	51	49	44	31	38	21
2023년	20	14	18	41	32	51	55	42	40	39	28	27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월별 감전사고 현황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공고)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이미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행정안전부는 장마와 호우로 물기·습기가 많아지는 여름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요령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따라서,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등 개정안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 심사 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관련 규정 】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축물의 수변전설비, 예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등 설계 시 침수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기계설비법」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 자료: 국토교통부

문 의 처

02)6788-5585